

제3장 이용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용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2의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라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1.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①대상자나 보호자의 서비스 요청
- ②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급여종류 홍보활동
- ③기관 장기요양요원의 개별 접촉, 및 주변 안내 등
- ④기관 홍보- 안내지(전단지) 홍보활동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5조(이용 계약) 1.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

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

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 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 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급하며 전자적으로도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별지25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 안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기관과 계약 당사자 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 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용료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과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방법 및 절차
수가 변경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계약기간이 만료 전일 경우는 안내문으로 통보하고 변경된 수가를 안내 후 적용한다.
등급 변경 시	변경되기 전 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재계약이나 변경계약을 작성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자격(본인 부담률) 변경 시	변경계약을 작성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고 변경된 자격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급여제공 시간, 횟수, 급여내용 변경 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는 유선으로 상호협의 하여 변경하고 급여변경 사유를 급여계획 변경 사유서나 상담일지, 급여 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작성한다.